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의안번호	제	호
------	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5.11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DGA사와 투자양해각서(MOU)를 체결함에 따라 구미 국가4공단 22-1-3블럭내 74,580㎡중 37,290㎡(50%)를 구미시가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취득재산

[투자통상과 소관]

(외국인투자지역 무상 임대부지 매입)

- 토 지 : 1필지 37,290㎡(총면적 74,580㎡의 50%)
- 예정가격 : 4,847,700천원(총 부지금액 9,695,400천원의 50%)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,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5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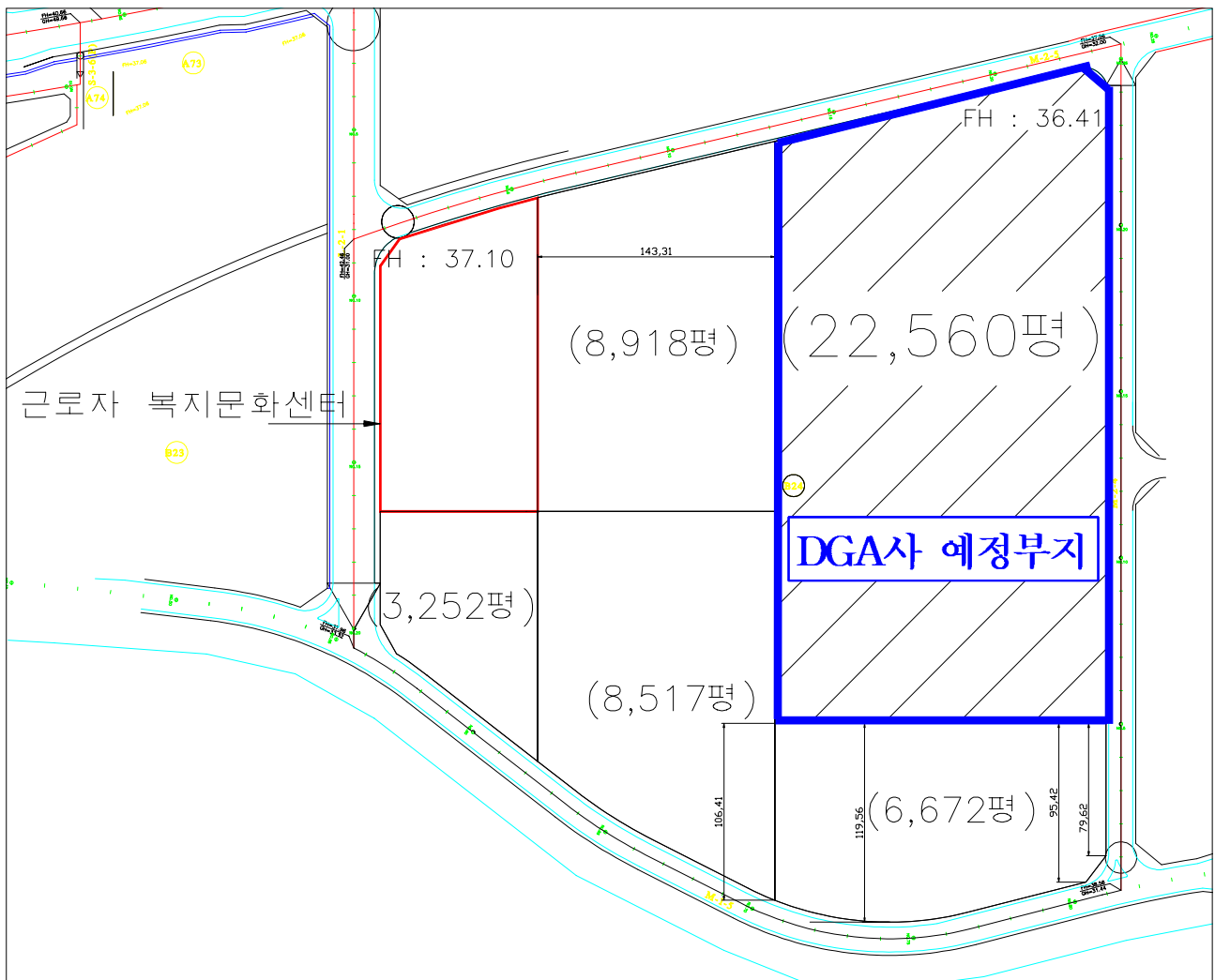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취득대상 토지

□ 재산의 표시

구미국가산업단지 제4공단 22-1-3, 공장용지 74,580㎡ 중 37,290㎡

□ 위치도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
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<생략>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지방재정법 제 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),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)

□ **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·개발)**

①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(이하 "외국인투자지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規定에 의한 지방산업단지(이하 "지방산업단지"라 한다)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1.29, 2004.12.31>

1.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
2. 외국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

□ **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 (국·공유재산의 임대 등)**

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1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<개정 2000.2.23, 2003.6.30, 2004.12.31>

1. 당해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
2. 당해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

②~ ⑥ <생략>

⑦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1.13>

⑧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, 기술이전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13>

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

□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)

①~④ <생략>

⑤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(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04.12.31>

1.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2.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
3.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·고용규모 및 사업내용
4.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
5.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
6. 재원조달계획
7.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
8. 개발사업의 시행자

9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
10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
11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
12.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
13.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
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
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
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지방의회
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<삭제 1995.11.15>
- ③<삭제 1995.11.15>
-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